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도시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시범사업에 관한 규제 특례에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국토청에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7명)을 증원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하안전관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하안전관리 인력 19명(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36명(5급 3명, 6급 9명, 7급 24명), 철도경찰 인력 31명(7급 3명, 8급 17명, 9급 1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항공청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12.00. 공포·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항공교통본부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주택임대차기획팀을 신설하며,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항공자격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각각 폐지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철도역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하부기구 명칭을 일부 변경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99. 99. ~ 99. 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정보화통계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을 “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를 “으로”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토교통 분야 기술 연구개발의 총괄 및 조정
3.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
4. 국토교통 분야 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과학기술 관련 해외진출, 국제협력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총괄 관리
10. 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 관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사업 등 지원
11. 국토교통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조정
12.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및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13. 국토교통 분야 창업지원 및 중소·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7항 중 “녹색도시과”를 “녹색도시과·도시재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도시재생금융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4항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조 제15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2.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의 지정
3.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운영 및 관리

4. 유희(遊休)부지, 공공(公共)공간 등 도시공간의 활용방안 연구·발전
5. 공동구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 도시방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9. 국가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
10.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11. 도시개발사업 통계조사 및 분석
12.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3. 수소도시 조성 지원 및 연구·발전
1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같은 조 제17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제18항부터 제2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정책·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3.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구조화
6.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
9.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10.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운영
11. 도시재생 관련 통계 분석·관리

제8조제7항 중 “주택정비과”를 “주택정비과·주택임대차기획팀”으로, “으로 보한다”를 “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주택임대차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임대차시장의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택임대차시장의 임대차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주택임대차신고 및 보호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택임대차 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9조제9항제5호 중 “하도급계약 관련”을 “관련”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항공산업과·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항공산업과”로, “항행위성정책과”를 “항행위성정책과·항공자격팀”으로, “국제

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을 “항공자격팀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 제9호 중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 제2권”을 “부속서 제2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0.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개정 등 협상 지원
31.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32.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33.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34.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35.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항공자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영어구술능력 포함)시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3.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립·운영
4.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교육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항공종사자의 주류 등의 섭취·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7.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항공신체검사 증명제도의 기준 수립
8.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9.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0. 항공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11. 외국인 항공종사자 고용 추천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제6항제7호 중 “전문가”를 “산학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심항공교통체계 인프라 개발 및 구축에 관한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5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설공사 불법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61조제1항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지방항공청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

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지방항공청의 관할 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및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의 위치란과 관할 구역란의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위치란과 관할구역란의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 양양공항출장소 및 원주공항출장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군산공항출장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남춘천센터, 서원주센터 및 강릉센터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명칭란 중 “신경주센터”를 “경주센터”로 하며, 신경주센터의 위치란 중 “신경주역”을 “경주역”로 하고, 익산센터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012”를 “1,0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01”을 “1,00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0”을 “61”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7”을 “18”로,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0”을 “61”로, 행정사무관 “85”을 “84”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를 “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1”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1”을 “63”으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3”을 “54”로, 공업주사 “7”을 “6”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17”을 “1,018”로 하고, 일반직 계 “1,006”을 “1,00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0”을 “61”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을 “18”로,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2”을 “63”으로, 행정사무관 “87”을 “8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를 “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1”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5”을 “67”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8”을 “49”로, 공업주사 “7”을 “6”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1,347”을 “1,345”로 하고, 일반직 계 “1,347”을 “1,345”로 하며, 행정주사 “38”을 “41”로, 공업주사 “6”을 “5”로, 시설주사 “152”를 “151”로, 행정주사보 “65”을 “72”로, 시설주사보 “219”를 “216”으로,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112”를 “111”로, 기계운영서기 “25”를 “24”로, 방호

서기보 “25”를 “24”로,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209”를 “207”로, 기계운영서기보 “38”을 “37”로 하고, 위생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9의2 중 총계 “1,347”을 “1,345”로 하고, 일반직 계 “1,347”을 “1,345”로 하며, 행정주사 “35”를 “38”로, 공업주사 “6”을 “5”로, 시설주사 “145”를 “144”로, 행정주사보 “65”을 “72”로, 시설주사보 “214”를 “211”로,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112”를 “111”로, 기계운영서기 “25”를 “24”로, 방호서기보 “25”를 “24”로,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209”를 “207”로, 기계운영서기보 “38”을 “37”로 하고, 위생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11 중 총계 “507”을 “504”로 하고, 일반직 계 “507”을 “504”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 “162”를 “161”로, 철도경찰서기 “196”을 “195”로, 철도경찰서기보 “63”을 “62”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총계 “507”을 “504”로 하고, 일반직 계 “507”을 “504”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 “160”을 “159”로, 철도경찰서기 “196”을 “195”로, 철도경찰서기보 “63”을 “62”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612”를 “608”로 하고, 일반직 계 “612”를 “608”로 하며, 항공주사 “163”을 “161”로, 항공주사보 “169”를 “168”로, 방송통신서기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612”를 “608”로 하고, 일반직 계 “612”를 “608”로 하며, 항공주사 “163”을 “161”로, 항공주사보 “169”를 “168”로, 방송통신서기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129”를 “127”로 하고, 일반직 계 “129”를 “1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8”을 “126”으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337”을 “335”로 하고, 일반직 계 “337”을 “33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6”을 “334”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1호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공정건설지원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공정건설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125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8조,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별표 2, 별표3, 별표4,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주택임대차기확팀 및 항공자격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주택임대차기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주택임대차기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주택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항공자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항공자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9조의2 관련)

1. 국토교통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3명 (5급 1명, 6급 2명)	2025년 9월 30일까지
3)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명 (6급 1명, 7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4) 철도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철도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6) 철도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6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7) 지하안전관리 (지방국토관리청)	2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8) 건설현장 안전점검 (지방국토관리청)	13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략)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재정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u>정보화통계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u> 및 <u>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u>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u>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⑥ ~ ⑩ (생략) ⑪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생략) 2. <u>국토교통부문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미래유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정책의 수립·시행</u>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u> ----- ----- ----- <u>으로</u> -----.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현행과 같음) 2. <u>국토교통 분야 기술 연구개발의 총괄 및 조정</u>

3. 국토교통부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3.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	<신 설>	11. 국토교통부 소관 기후대응 기금 관련 협의·조정
4. 국토교통부문 국내외 정책동향 및 환경의 점검·분석 및 전망	4. 국토교통 분야 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및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5. 국토교통부문 산업·고용정책 관련 대내외 협의·조정	5.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국토교통 분야 창업지원 및 중소·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6.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관련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⑫ ~ ⑭ (생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7.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관련 해외협력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과학기술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⑮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8.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관련 대내외 회의체 운영	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 분야 기술 연구개발의 총괄 및 조정	
9.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관련 추진사항 이행 관리	9. 국토교통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총괄 관리	2. 국토교통 분야 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10. 국토교통부문 산업의 혁신 촉진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 관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사업 등 지원	3. 국토교통 분야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 분야 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	
		6.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8.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관
련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 분야 기술평가기관
에 관한 사항

10. 국토교통부문 기후변화 대
책 총괄

11. 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
축 관련 사항에 관한 총괄·국
제협력 및 통계관리

12. 국토교통부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관한 사항

13. 국토교통부문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14. 국토교통부문 녹색성장 전
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과제관리·홍보

15. 국토교통부문 일자리 및 고
용창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조정

16. 국토교통부문 미래 성장동
력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 기
업 육성에 관한 사항 총괄·조

정

17. 국토교통 분야 기술 활용촉
진을 위한 중소·벤처 기업 창
업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18.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실용
화 촉진에 관한 사항 총괄·조
정

19. 국토교통부문 중소·벤처
기업 육성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20.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산하기관의 국토교통 분야
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중소·벤
처 기업 육성 관련 업무 총괄·
조정

제7조(국토도시실) ① ~ ⑥ (생
략)

⑦ 국토도시실에 국토정책과·
수도권정책과·지역정책과·산
업입지정책과·성장거점정책과
·도시정책과·도시경제과·도
시활력지원과·녹색도시과·스
마트도시팀·건축정책과·녹색
건축과·건축문화경관과·건축
안전과·국토정보정책과·공간

제7조(국토도시실)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

-----녹색도시과·도
시재생과-----

정보제도과 · 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으로, 스마트도시팀장은 과학기 술서기관 · 서기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 ----- ----- ----- -----.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관 한 사항	<삭 제>
17. ~ 22. (생 략)	17.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도시재생금융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
23. ~ 26. (생 략)	24. ~ 27. (현행 제23호에서 제 26호까지와 같음)
⑭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 22. 삭제	
23. 도시재생금융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	<삭 제>
24.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	<삭 제>

성화 계획의 국가지원사업 결 정과 추진실적 평가	
25.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 업 관리 및 시행의 지원	<삭 제>
26.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발 굴 및 사업구조화	<삭 제>
27.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특수 목적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	<삭 제>
28. ~ 30. (생 략)	28. ~ 30. (현행과 같음)
⑮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⑮ ----- -----.
1. 도시재생정책 · 제도의 입안 및 연구 · 발전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관련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 및 사업 추진실적 평가	2.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 역의 지정
3.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관 리 및 시행의 지원	3.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운 영 및 관리
4.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 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희(遊休)부지, 공공(公共) 공간 등 도시공간의 활용방안 연구 · 발전
5. 도시재생 기술개발 및 해외 도시재생정책 연구에 관한 사 항	5. 공동구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 발전
6. 도시대학 등 주민참여형 도	6. 도시방재계획의 수립 · 운영

<u>시재생 역량 강화 지원</u>	<u>에 관한 사항</u>	<u>영 및 관리</u>	
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7. 도시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9.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 진지역 개발사업 및 주거 취 약지역 개조사업 관련 민원업 무	<삭 제>
8. 도시재생전문가 육성 및 인 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0. 삭제	
9.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 업에 대한 부처 간 협업 지원 · 촉진	9. 국가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	21. 유희(遊休)부지, 공공(公共) 공간 등 도시공간의 활용방안 연구·발전	<삭 제>
10.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 업에 대한 컨설팅·자문	10.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22. ~ 26. 삭제	
11.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 센터 등 지원	11. 도시개발사업 통계조사 및 분석	27. 공동구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삭 제>
1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관 리	12.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관 한 사항	28. 도시방재계획의 수립·운영 에 관한 사항	<삭 제>
13.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	13. 수소도시 조성 지원 및 연구 · 발전	29. ~ 34. 삭제	
14.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운 영	1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 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35. 도시개발 관련 법령·제도 의 운영 및 연구·발전	<삭 제>
15. 도시재생 관련 통계 분석· 관리	1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제도 의 운영 및 연구·발전	3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 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 전	<삭 제>
16. 도시재생정책 홍보전략 수 립 및 시행	<삭 제>	37. 국가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	<삭 제>
17.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 역의 지정	<삭 제>	38.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삭 제>
18.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운	<삭 제>	39. 도시개발사업 통계조사 및	<삭 제>

<u>분석</u> 40. <u>수소도시 조성 지원 및 연구·발전</u> 41. <u>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u> 42. <u>도시·군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u> ⑩ (생략) <u><신설></u>	<u><삭제></u> <u><삭제></u> <u><삭제></u> ⑩ (현행과 같음) ⑪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도시재생정책·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u> 2. <u>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u> 3. <u>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4. <u>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5. <u>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구조화</u> 6. <u>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7. <u>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u>	⑪ ~ ⑮ (생략)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⑤ (생략) ⑥ 삭제 ⑦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비과·주거복지정책과·주거복지지원과·공공주택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토지정책과·부동산투자제도과·부동산평가과·부동산개발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 ⑪ (생략) ⑫ 삭제	8. <u>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u> 9. <u>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u> 10. <u>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운영</u> 11. <u>도시재생 관련 통계 분석·관리</u> ⑮ ~ ⑲ (현행 제17항에서 제25항까지와 같음)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⑦ ----- -----주택정비과·주택임대차기획팀----- -----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 ⑪ (현행과 같음) ⑫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다음
---	--	---	--

	<u>사항을 분장한다.</u> 1. <u>주택임대차시장의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u> 2. <u>주택임대차시장의 임대차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u> 3. <u>주택임대차신고 및 보호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u> 4. <u>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 5. <u>주택임대차 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u>
⑬ ~ ㉑ (생략)	⑬ ~ ㉑ (현행과 같음)
㉒ ~ ㉕ 삭제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⑧ (생략)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공정건설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⑨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공사 <u>하도급계약</u> 관련 불법행위 적발 등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5. ----- <u>관련</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⑩ ~ ⑬ (생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⑤ (생략)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첨단항공과·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항공안전정책과·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항공교통과·항행위성정책과·공항정책과·공항운영과·항공보안정책과 및 공항건설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 및 공항건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⑥ ----- ----- <u>항공산업과</u> ----- ----- ----- <u>항행위성정책과</u> ----- <u>·항공자격팀</u> ----- ----- ----- ----- <u>항공자격팀장</u> ----- ----- ----- ----- -----.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u>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삭제>
1. <u>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	
2. <u>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개정 등 협상지원</u>	
3. <u>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u>	

<u>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u> 4. <u>이사회·항행위원회 등 국제 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u> 5. <u>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u> 6. <u>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국제 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 표준 제정·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u> 7. <u>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u> ⑫ 삭제 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삭제 9. <u>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 제2권(항공규칙) 및 제19권(안전관리)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u> 10.·11. 삭제 12. <u>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13. <u>외국인 항공종사자 고용 추</u>	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현행과 같음) 9. ----- <u>부속서 제2권</u>----- ----- ----- ----- <삭 제> <삭 제>		<u>천에 관한 사항</u> 14. <u>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u> 15. <u>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의 수립·운영</u> 16. <u>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립·운영</u> 17. <u>항공특성화 대학 지정 등 항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18. <u>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9. <u>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u> 20. <u>항공안전공무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u> 21. <u>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u> 22. <u>항공종사자의 주류등의 섭취·사용제한에 관한 사항</u> 23. <u>항공신체검사 증명제도의 기준 수립</u> 24. <u>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및 운</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	--	--

영			
25.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삭 제>		분장한다.
26. ~ 28. (생 략)	26. ~ 28. (현행과 같음)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영어구 술능력 포함)시험 제도 운영 에 관한 사항
<신 설>	29.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 치는 제외한다) 조종자 및 경 량항공기 조종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신 설>	30.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 제 조약의 제정·개정 등 협 상 지원		3.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 립·운영
<신 설>	31.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 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4.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2.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국 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5.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 관 지정 등 교육정책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신 설>	33.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 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6. 항공종사자의 주류 등의 섭 취·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신 설>	34.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국 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개정 관련 국 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 괄		7.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항 공신체검사 증명제도의 기준 수립
<신 설>	35.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8.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에 관 한 사항
⑭ ~ ⑰ (생 략)	⑭ ~ ⑰ (현행과 같음)		9.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 1권(항공종사자 면허) 상의 국
<신 설>	⑱ 항공자격팀장은 다음 사항을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공정건설지원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및 디지털도로팀은 2025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
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
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
난 날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전
략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항공과장이 분장한다.

④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공정건설지원팀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정책팀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
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토교통
과학기술정책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보좌
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12</u>	<u>1,013</u>	+1
·	·	·	
·	·	·	
일반직 계	<u>1,001</u>	<u>1,002</u>	+1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60</u>	<u>61</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7</u>	<u>18</u>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	<u>60</u>	<u>61</u>	+1

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	
행정사무관	<u>85</u>	<u>84</u>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4</u>	<u>3</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u>	<u>1</u>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1</u>	<u>63</u>	+2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53</u>	<u>54</u>	+1
·	·	·	
·	·	·	
공업주사	<u>7</u>	<u>6</u>	-1
·	·	·	
·	·	·	

<u>공업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17</u>	<u>1,018</u>	+1
.	.	.	
.	.	.	
일반직 계	<u>1,006</u>	<u>1,007</u>	+1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60</u>	<u>61</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 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환경사무관·항 공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	<u>17</u>	<u>18</u>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	<u>62</u>	<u>63</u>	+1

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행정사무관	<u>87</u>	<u>86</u>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4</u>	<u>3</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u>	<u>1</u>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5</u>	<u>67</u>	+2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48</u>	<u>49</u>	+1
.	.	.	
.	.	.	
공업주사	<u>7</u>	<u>6</u>	-1
.	.	.	
.	.	.	

공업주사보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47</u>	<u>1,345</u>	-2
일반직 계	<u>1,347</u>	<u>1,345</u>	-2
·	·	·	
·	·	·	
행정주사	<u>38</u>	<u>41</u>	+3
·	·	·	
·	·	·	
공업주사	<u>6</u>	<u>5</u>	-1
시설주사	<u>152</u>	<u>151</u>	-1
·	·	·	
·	·	·	
행정주사보	<u>65</u>	<u>72</u>	+7
·	·	·	
·	·	·	
시설주사보	<u>219</u>	<u>216</u>	-3
·	·	·	
·	·	·	
위생서기	<u>1</u>	<u><삭 제></u>	-1
·	·	·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u>112</u>	<u>111</u>	-1
·	·	·	
기계운영서기	<u>25</u>	<u>24</u>	-1
·	·	·	
·	·	·	
방호서기보	<u>25</u>	<u>24</u>	-1
·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 보	<u>209</u>	<u>207</u>	-2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38</u>	<u>37</u>	-1
·	·	·	
·	·	·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47</u>	<u>1,345</u>	-2
일반직 계	<u>1,347</u>	<u>1,345</u>	-2
·	·	·	
·	·	·	
행정주사	<u>35</u>	<u>38</u>	+3
·	·	·	
·	·	·	
공업주사	<u>6</u>	<u>5</u>	-1
시설주사	<u>145</u>	<u>144</u>	-1
·	·	·	
·	·	·	
행정주사보	<u>65</u>	<u>72</u>	+7
·	·	·	
·	·	·	
시설주사보	<u>214</u>	<u>211</u>	-3
·	·	·	
·	·	·	
위생서기	<u>1</u>	<u><삭 제></u>	-1
·	·	·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u>112</u>	<u>111</u>	-1
·	·	·	
기계운영서기	<u>25</u>	<u>24</u>	-1
·	·	·	
·	·	·	
방호서기보	<u>25</u>	<u>24</u>	-1
·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 보	<u>209</u>	<u>207</u>	-2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38</u>	<u>37</u>	-1
·	·	·	
·	·	·	

[별표 1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07</u>	<u>504</u>	-3
일반직 계	<u>507</u>	<u>504</u>	-3
·	·	·	
·	·	·	
철도경찰주사보	<u>162</u>	<u>161</u>	-1
·	·	·	
철도경찰서기	<u>196</u>	<u>195</u>	-1
철도경찰서기보	<u>63</u>	<u>62</u>	-1
·	·	·	
·	·	·	

[별표 11의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07</u>	<u>504</u>	-3
일반직 계	<u>507</u>	<u>504</u>	-3
·	·	·	
·	·	·	
철도경찰주사보	<u>160</u>	<u>159</u>	-1
·	·	·	
철도경찰서기	<u>196</u>	<u>195</u>	-1
철도경찰서기보	<u>63</u>	<u>62</u>	-1
·	·	·	
·	·	·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12</u>	<u>608</u>	-4
일반직 계	<u>612</u>	<u>608</u>	-4
·	·	·	
·	·	·	
항공주사	<u>163</u>	<u>161</u>	-2
·	·	·	
·	·	·	
항공주사보	<u>169</u>	<u>168</u>	-1
·	·	·	
·	·	·	
방송통신서기	<u>11</u>	<u>10</u>	-1
·	·	·	
·	·	·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12</u>	<u>608</u>	-4
일반직 계	<u>612</u>	<u>608</u>	-4
·	·	·	
·	·	·	
항공주사	<u>163</u>	<u>161</u>	-2
·	·	·	
·	·	·	
항공주사보	<u>169</u>	<u>168</u>	-1
·	·	·	
·	·	·	
방송통신서기	<u>11</u>	<u>10</u>	-1
·	·	·	
·	·	·	

[별표 16]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9</u>	<u>127</u>	-2
일반직 계	<u>129</u>	<u>12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8</u>	<u>126</u>	-2

[별표 16의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7</u>	<u>335</u>	-2
일반직 계	<u>337</u>	<u>335</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6</u>	<u>334</u>	-2